

결 정

2018 - 2015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임 채 청
2.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3.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5.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주 문

東亞日報 2017년 12월 1일자 A31면 「화제의 책 ‘전립선, 기적의 완치’/전립선, 삶이 황폐해지는 질병」 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2월 5일자 A32면 「화제의 책 ‘당뇨, 기적의 완치’/당뇨, 혈압, 내몸은 내가 지킨다」 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12월 6일자 26면 「화제의 책 ‘당뇨, 기적의 완치’/당뇨, 혈압, 내몸은 내가 지킨다」 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12월 7일자 A35면 「화제의 책 ‘전립선, 기적의 완치’/전립선, 삶이 황폐해지는 질병」 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2월 11일자 35면 「화제의 책 ‘당뇨, 기적의 완치’/당뇨, 혈압, 내몸은 내가 지킨다」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5개지의 적시 광고들은 겉으로는 ‘당뇨, 기적의 완치’, ‘전립선 기적의 완치’라는 제목의 책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박사 110’과 ‘과워샘K-과워추출물’이라는 당뇨 및 전립선 환자용 천연물질을 선전하고 있다. 책 판매보다는 특정 질병 관련제품을 파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설령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

강은 법규 위반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용 담	김용담
위 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강 희	강희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